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167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625,747원 및 그 중 27,287,012원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4. 7. 2.까지는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6. 1. 체결한 매매계약과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6.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23,06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3,0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020-04-20	C	40,000,000원(보증비율: 100%)	2025-04-21
------------	---	-------------------------	------------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3. 9. 21. 피고 A의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4. 3. 7. D은행에 27,542,08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55,07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27,287,012원이다.

4) 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5원{255,070원 × 8% × 1/365(2024. 3. 7. ~ 2024. 3. 7.)}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38,680원¹⁾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625,747원(= 27,287,012원 + 55원 + 338,680원) 및 그 중 27,287,012원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4. 7. 2.까지는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피고 A은 2023. 6.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1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3. 6. 12.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3. 6. 12. 접수 제5619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1토지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 2) 피고 A은 2023. 6.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2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3. 6. 2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159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토지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 2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4. 3. 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2매매계약 당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 A의 자산과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1, 2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인 2023. 9. 21. 피고 A의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무자력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 1, 2 토지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던 다른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그에 반하여 피고 A은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7,250,000원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2,291,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2022-01-05	2,644,000	신용대출
2	2021-04-12	3,074,000	신차할부	
3	2020-11-09	12,001,000	신용대출	
4	2022-06-27	28,988,000	기타담보대출	
5	2019-07-11	15,584,000	신용대출	
합계		62,291,000		

라.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2)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1, 2토지를 피고 B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은 1, 2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고,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악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B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토지에 관하여 1매매계약 이후인 2023. 10. 16. E의 가압류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사실, 2토지에 관하여 2매매계약 이후인 2024. 1. 26. 권리자 국(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이 1, 2토지를 위와 같은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피고 A에게 이전해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의 원물반환은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10. 19. 기준 1, 2 토지의 가액 합계는 149,476,000원(감정가액 298,952,000원 $\times$ 1/2)인 사실, 1, 2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F조합의 피담보채무가 126,4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2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공동담보액은 23,066,000원(= 149,476,000원 - 126,410,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보다 적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23,066,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 소결

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담보액인 23,06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3,0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근

별지

1) 청구원인에 기재된 425,050원은, 338,680원의 오기로 보인다.